

##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. 6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6. 15

다. 상 정 일 자 : 2005. 7. 4

(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·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)

### 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

나. 제안사유

- 재난·재해에 관한 소관부서가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됨으로써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회계공무원 변경

- 기존 기금운용관인 “건설과장”을 “재난안전관리과장”으로, 기금출납원인 “재난방재담당”을 “재난관리담당”으로 변경
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재구성

- 기존 위원회 부위원장인 “건설과장”을 “재난안전관리과장”으로, 간사인 “재난방재담당”을 “재난관리담당”으로 변경

- 관련근거 :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조석호)

- 행정기구 개편에 의하여 기존 건설과에서 관장하던 업무 일부가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담당 부서장 등의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조례로서 당연 개정 사항임.

### 4. 질의 답변요지

“생략”

### 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### 6. 심사결과

“원안 의결”

### 7. 불 입 :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# 화순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화순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재난안전관리과장
2. 기금출납원 : 재난관리담당

제10조 제3항중 “건설과장”을 “재난안전관리과장”으로 하고,  
동조 제5항중 “재난방재담당”은 “재난관리담당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회계공무원)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</p> <p>1.기금운용관 : <u>건설과장</u></p> <p>2.기금출납원 : <u>재난방재담당</u></p> <p>②(생략)</p> <p>제10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</p> <p>①-②(생략)</p> <p>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<u>건설과장</u>이 된다.</p> <p>④(생략)</p> <p>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충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<u>재난방재담당</u>이 된다.</p>	<p>제9조(회계공무원) ①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기금운용관 : <u>재난안전관리과장</u></p> <p>2.기금출납원 : <u>재난관리담당</u>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</p> <p>①-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.....</p> <p>.....<u>재난안전관리과장</u>.....</p> <p>④(현행과 같음)</p> <p>⑤.....</p> <p>.....<u>재난관리담당</u>.....</p> <p>.....</p>